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07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김정호·이훈기·김동아

전진숙 • 허종식 • 윤후덕

박희승 · 김남희 · 이수진

박 정 · 신영대 · 장종태

임미애 · 이연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규정하 고 있음.

반면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기업들이 1주간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69조).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
제51조의3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
제69조 본문 중 "35시간"을 "30시간"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금융·보험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30년 1월 1일
 -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31년 1월 1일
 -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32년 1월 1일

-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 2033년 1월 1일
-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 2034년 1월 1일
-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37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날
- 제2조(1주간 근로시간에 관한 적용례) 사용자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

율적으로 정한다.

제4조(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	제50조(근로시간) ①			
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u> 36시간</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			
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	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			
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	산)			
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				
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				
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				
한 기간을 평균하여 1 주간에 $\underline{4}$	<u>3</u>			
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6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제69조(근로시간)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에 7시간, 1주에 <u>35시간</u> 을 초과	<u>30시 간</u>			
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	·			
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